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 법률 제20399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재해(災害)”를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2장에 제7절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원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사망조위금 산정기준) ①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를 준용한다.

②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사망조위금은 제10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로 한다.

제44조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역학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 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한 사람
 2.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장 및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거나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인사혁신처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내역(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결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5.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벌칙)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애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손상자녀의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절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유족연금 등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보고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